

의안번호	2204068
의 퇴 인	서왕진의원
회 답 일	2024.10.14
추계번호	24D3855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43억 7,500만원(연평균 8억 7,5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(2026~2030)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인건비 등	540	519	528	537	546	2,669	534
사업비	327	334	341	348	355	1,705	341
합계	867	853	869	885	901	4,375	875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45조의2(기후위기특별위원회)	-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,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, 「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」,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 및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, 재생에너지 활성화 등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법률안의 심사, 기후대응기금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,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, 그 밖에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한 안건의 심사를 함(제1항) -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제81조 및 제84조의2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로 봄(제2항) - 기후위기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20명으로 함(제3항) -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(제4항)	의무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45조의2(기후위기특별위원회)	○	-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설치에 따른 재정소요는 과거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설위원회로 운영된 사례를 참고하여 추계
 -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설특별위원회로 운영되고 있으나, 예산안,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의 심사 등 국가재정 전반을 업무범위로 다루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른 참고사례로 활용하지 않음
- 기후위기특별위원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나 규모가 크지 않아 기존 국회 내 여유 공간을 활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에서 제외
- 개정안 부칙에서 법을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과 법안 심사 기간 등을 고려하여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기간을 추계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구성

- 증원인원 인건비 등과 관련된 비용은 공무원 보수, 기관부담금, 기본경비, 자산취득비임
-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규모는 과거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설위원회로 운영된 당시 직제상 인원(총 6명: 수석전문위원 1명, 4급 1명, 6급 1명, 8급 1명, 9급 2명)을 참고하여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설치에 따른 직급별 증원인원을 추정함
 - 윤리특별위원회는 1991년 5월 31일부터 「국회법」 개정(2018년 7월 17일) 이전까지 상설위원회로 운영된 바가 있음
- 신규인력 6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등은 공무원 보수, 기관부담금, 기본경비, 자산취득비임
 - 공무원 보수는 2024년 국회 인건비 예산을 참고¹⁾하여,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(2024년 7월)한 공무원임금상승률을 반영하고, 기관부담금과 자산취득비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기관부담금 비율, 공무원 1인당 자산취득비를 적용하며, 기본경비는 국회 인건비 대비 기본경비 비율(8.2%)을 고려하여 산출하면 다음 표와 같음
 - 공무원 보수는 기본연봉 및 봉급에 최근 3년(2022~2024)간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1.9%를 적용하고, 수당(입법수당 등)은 추계기간 동안 동일한 것으로 가정함
 - 기관부담금(공무원연금,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)은 공무원 보수에 공무원 신규 채용 관련 기관부담요율²⁾을 적용하여 산출함
 - 자산취득비는 2026년 일회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증원인력 6명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(2024년 7월)한 정부기관 1인당 자산취득비 단가³⁾를 곱하여 산출함

1) 수석전문위원 및 4~5급은 기본연봉, 입법수당, 정액급식비, 직급보조비, 연가보상비를 포함한 금액이며, 6~9급은 봉급, 입법수당, 정액급식비, 직급보조비, 연가보상비, 성과상여금, 시간외 근무수당, 정근수당, 정근수당가산금, 명절수당을 포함한 금액임

2) 공무원 신규 채용 관련 기관부담요율(2024. 7.)

구 분	2026	2027	2028	2029	2030
기관부담률	13.210%	13.305%	13.399%	13.494%	13.584%

3) 2026년 정부기관 1인당 자산취득비는 5,020,000원임

[표 2] 증원인력에 대한 인건비 등(2026~2030)

(단위: 백만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
보수	420	427	434	441	449	2,170
기관부담금	55	57	58	60	61	291
기본경비	34	35	36	36	37	178
자산취득비	30	0	0	0	0	30
합계	540	519	528	537	546	2,669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□ 기후위기특별위원회의 사업비 추계액은 2018년도 윤리특별위원회운영경비 예산을 참조

○ 사업비는 2018년도 윤리특별위원회운영경비 예산 2억 7,100만원에 국회 예산정책처가 전망(2024년 7월)한 소비자물가상승률⁴⁾을 적용하여 추계

[표 3]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사업비(2026~2030)

(단위: 백만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
사업비	327	334	341	348	355	1,705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나. 추계결과

□ 개정안에 따라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43억 7,500만원(연평균 8억 7,5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4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(2026~2030)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인건비 등	540	519	528	537	546	2,669	534
사업비	327	334	341	348	355	1,705	341
합계	867	853	869	885	901	4,375	875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4) 2026년 2.2%, 2027년 2.1%, 2028년 2.1%, 2029년 2.1%, 2030년 2.0%임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 결과는 2018년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설위원회로 운영된 당시의 직제와 사업비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 실제 증원인력 및 사업비, 인력 재배치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전수연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전수연	02-6788-4667	syjeon@assembly.go.kr